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2019. 6.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국세청이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한 법인과 세무문제를
사전협의를 · 해결하여,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실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투명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해결해드리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 구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15.7월 성실납세협약제도로 명칭 변경

제도에 참여한 협약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신청 대상을 수입금액 1천 억원 미만에서 1천5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세무진단 횟수를 줄여 법인의 부담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협력적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 6.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 권 오

CONTENTS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01	성실납세 협약제도 개요	4
02	기대효과	5
03	협약체결 절차	6
04	협약의 주요 내용	11
05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혜택	17
06	자주 묻는 질문	18
참고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검토 기준	23
붙임		
	성실납세 협약제도 관련 서식	26



「성실납세 협약제도」 개요

-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세무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여,
 -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해결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대효과

법인은

-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 세무문제에 대한 사후 소명의 어려움이 해소되며
- 모범납세자 표창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 성실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 세금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 법인의 세무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처리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을 조성하고,
- 성실한 법인에게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주어 법인의 납세성실도 향상 및 상호 신뢰·협력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협약체결 절차

1. 신청요건

-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 협약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고 1천5백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법인



내부세무통제시스템(Tax Control Framework)이란?

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능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를 말합니다.

〈참고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검토기준〉

2. 신청 방법

자격요건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00억원 ~ 1천 5백억원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TCF) 구축

신청서류

- 협약신청서
- 회사소개, 사업내용, 조직·출자관계
- TCF 구축·운영 현황
- 기타 참고서류

신청시기

- 매년 7월1일 ~ 9월30일
-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류 제출



-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붙임)와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진단신청서(희망법인에 한함)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국세청에서는 협약체결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세무진단 결과가 우수할 경우 향후 협약법인 선정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한 법인은 협약서 체결 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3. 협약법인 선정



- 국세청은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선정요건을 심사하여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 서면 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내부선정기준 심사

- 신청 법인의 계속 사업 여부, 신고·납부 이력, 조사·경정 결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이전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법인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자 면담, 내부세무통제 시스템 구축·운영현황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세무진단

- 협약체결 신청 시 희망한 법인에 대하여 협약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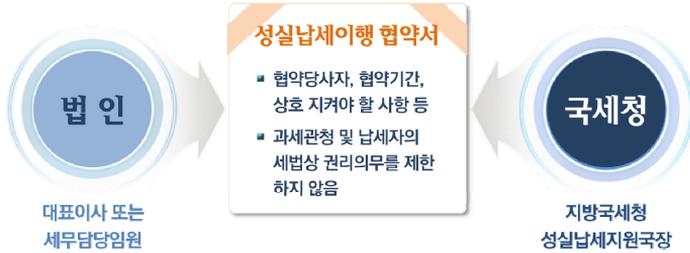


- 협약 체결의 조건으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개선 등 체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은 협약체결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법인에게 통지합니다.
 - 협약체결 법인 선정 ⇒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기업 선정 통지서」
 - 협약체결 거부 ⇒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에 대한 회신서」

참고 내부선정기준 심사 시 주요 검토내용

- **사업의 계속성**
 -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여부
 - * 청년창업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은 제외
- **신고·납부의 성실성**
 - 최근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결손 여부
 - * 청년창업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은 제외
 - 법인 또는 대표자의 체납이 있는지 여부
- **조사·경정 내용의 성실성**(예: 과거 세무조사 결과 등)
- **관련 법규의 준수성**
 -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된 사실 여부
 -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세금 부과여부
 - 국세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여부
 - 3년 이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등
- **이전가격 적정성**
 - 이전가격 조작혐의 여부 및 정기미팅을 통한 이전가격 문제해결 가능 여부 등
- **기타 배제기준**(예: 조세포탈 혐의, 사치·향락업종 등)

4. 협약 체결



- 국세청장과 협약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됩니다.
 - － 성실납세이행협약서는 「표준 성실납세이행협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 － 협약의 서명 당사자는 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세무담당 임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됩니다.



「성실납세 이행협약서」는 상호 신사협정으로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법인과 세무상 문제점 등에 관해 상시 논의·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
 - －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협약체결 보좌역으로 하여 세무상 문제점 제시, 협의 시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협약기간

-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협약 개시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협약 체결 후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협약개시일

- 협약은 협약체결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시합니다.

* 예 : 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1일, 3월말 법인 4월1일, 6월말 법인 7월1일 등

3. 협약체결 세목

- 협약체결 세목은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예 :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목, 교통세 등

- 법인이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약 업무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는 반드시 대상 세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세무문제 공개 및 답변 의무



- 협약체결 법인은 쟁점 세무문제를 국세청(세무진단팀)에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은 상담·서면답변(법령해석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 국세청에 공개한 세무문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됩니다.

- 법인이 공개한 세무쟁점이 중요한 법령해석 사항,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또는 기타 세무진단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법인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진단팀은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지문을 거쳐 답변합니다.
- 이 경우 체결 법인은 세무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인의 의견을 적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4주 이내(기획재정부 질의·회신기간 및 보정요구기간 불포함)에 문서로 회신합니다.



5. 정기·수시 세무진단

- 국세청은 정기(연 1회) 또는 수시(법인 요청)로 중요 회계처리 시 법인의 쟁점 세무문제와 기타 궁금한 사항을 함께 논의·해결하고, 내부세무통제시스템 및 협약이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협약체결 법인별로 세무진단팀을 지정하여 협약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 세무진단팀은 정기 세무진단 시 법인을 방문하여 법인이 공개한 세무문제를 논의하고, 협약의 이행 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세법이 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적정 운영 여부 및 개선할 사항
- 직전 세무진단 시 보완할 사항으로 통지된 사항 이행 여부
- 기타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세무진단팀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샘플확인(Sample Test)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세무진단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기는 협약체결 법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세무진단 기간은 법인의 규모와 세무쟁점 건수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0일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 국세청과 협약체결 법인은 필요한 경우 수시 세무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과세자료처리, 경정청구 처리, 중요회계사건* 발생, 기타 세원관리에 필요하거나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회계사건

- 합병·분할 등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사항
- 회사의 조직변경,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 사항
- 협약체결 법인의 대주주 변동사항
- 국세신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 특히, 중요회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문서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이 파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약의 효력

- 협약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협약 체결 국세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 협약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문제를 논의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협약체결 법인의 수입금액이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 신청 요건(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입금액이 2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협약은 종료합니다.

7. 협약 갱신 및 파기

-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선정심사, 선정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 다만,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 시 기존의 협약 이행내용, 경영환경, 세무신고 내용 등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또는 법인 모두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협약은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국세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
가.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 받는 경우
나.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2. 탈세제보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진단 결과 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세무조사(자료처리 경정포함) 결과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폐업, 합병 또는 분할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중요 회계사건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국세청에 문서로 알리지 않는 경우
9.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만, 다음의 사유는 협약의 파기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1. 고의가 아닌 단순누락이나 착오에 의한 신고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 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과실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신고가 누락되어,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3. 국세청 유권해석 등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확정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5.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6. 공개 또는 제시한 세무쟁점에 대해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로 법인이 국세청의 답변과 다르게 세무처리한 경우 그 금액 등이 비교적 적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세청은 상기의 협약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은 7일 이내 (공휴일 제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명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은 제출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 자료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내용의 검토결과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에게 협약 파기를 통지하게 됩니다.
- 협약파기를 통보받은 법인은 협약 파기일 부터 3년간 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이 공개한 주요 세무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답변해 드립니다.
- 주요 세무문제가 사업연도 진행 중에 신속·정확하게 해결되어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부담 등이 절약됩니다.
-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해당법인에게 문서로 통지
- 통상적인 세원관리 담당부서는 협약 세무진단팀으로 일원화됩니다.
 - 협약 세무진단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단일화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순 세금계산서 불부합 등 과세자료는 일부 세무서에서 처리
- 국세청은 정기 세무진단을 통해 법인이 건의하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제도 개선 시 반영합니다.
-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납세자의 날 표창」시 협약법인에게 평정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약체결 명단을 공개하여 대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소기업도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의 법인이 신청대상이며, '19년 협약 시부터 신청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종전 1천억원 미만 → 1천5백억원 미만으로 확대)

Q2. 협약체결 시 우대받는 법인은?

- 조사모범납세자(우대 중 법인),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 법인(1년 내), 청년창업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기업, 세금포인트 많은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등임

Q3. 특정 세목 또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협약체결 세목은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납세자가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약업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나 법인세는 반드시 대상 세목에 포함되어야 함
-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사업연도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는 없음



Q4.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내부세무통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야만 하는지?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란 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며,
- 개별 법인이 업종의 특성 및 고유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신청 법인이 기존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있고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원칙 (참고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검토기준)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새로운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음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구비한 법인과 협약 체결함이 원칙이나,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일부 미흡한 법인에 대하여도 향후 3년 내에 보완 및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Q5. 체결 법인이 국세청(세무진단팀)의 답변·입장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 법인이 공개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진단팀)의 답변 및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한 후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협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Q6. 협약체결 법인은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미공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상호 신뢰 및 의사소통을 기초로 법인은 주요 세무문제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국세청은 적시에 답변·해결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세무문제 공개 여부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으나, 만약 자진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협약을 파기하거나, 정기 세무 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법인이 공개하지 않은 세무쟁점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주요 쟁점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적절한 처리여부를 검토·확인할 수 있음

Q7. 국세청에 의해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 됨

Q8. 국세청(세무진단팀)이 실시하는 현장출장은 또 다른 세무 간섭이 아닌지?

-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협력관계 하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해가는 제도로 세무쟁점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세무진단팀의 정기 또는 수시 현장 출장이 효율적임

- 다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진단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3~10일로 하고 방문일정도 기업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 성실성이 검증된 갱신법인 등에 대해서는 출장횟수, 성실성 검증 범위를 완화하여 협약에 따른 법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현장출장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샘플확인 방식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Q9. 협약체결 법인은 모두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 협약진행 과정에서 공개·논의된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 납세가 인정되는 법인에 한하여, 해당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따라서, 법인의 세무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부분의 협약 체결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협약이행이 불성실하거나 주요 세무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협약대상 사업연도에 한하므로 협약체결 이전의 과거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받지 아니함
- 또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탈세제보 등 추후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음



Q10. 외국계 법인의 이전가격 과세문제도 협약체결을 통하여 세무신고 전에 해소가 가능한 지?

- 외국계 법인의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중요한 세무쟁점의 하나로서 당연히 공개·협의를 할 사항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기업은 세무진단팀에게 정상가격 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세무진단팀도 협약체결 기업의 세무신고 전 과거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등을 검토하여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사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나, 정상가격 산정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세무신고 전 조기 해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무신고 전에 이전가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후 8개월 내에 신고금액의 적정 여부를 계속 논의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신고한 국제거래금액 또는 이윤이 적정하거나 수정 신고를 통해 해소된 경우(기타 주요쟁점 포함)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개별 법인은 업종의 특성과 고유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각 법인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기본 원칙들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1. 통제환경

다른 내부통제 요소가 적절히 운영되기 위한 기초로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말합니다.

- 법인의 성실납세의식 적정 여부
 - 대표이사 및 세무임원의 투명한 성실납세의지 여부
 - 적절한 법인 윤리강령 수립 및 실천의지, 조직 내 전파 여부
- 적절한 세무전략의 수립·시행 여부
 - 경영진의 구체적인 세무업무 운영방침의 수립 여부
 - 발생 가능한 세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원칙 설정 여부
 - 세무 부서의 적절한 미션 및 목표 설정 여부
- 적정 세무인력의 운용 및 교육 여부
 - 세무문제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구비 여부
 - 개정 세법교육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구비 여부
- 세무업무 관련 조직 구조의 적정 여부
 - 주요 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여부
 - 세무 부서의 권한 및 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여부
 - 세무업무의 적절하고 명확한 내부 보고체계 구축 여부

- **중요 세무위험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의 적정 여부**
 - 적절한 내부 감사 조직 및 위험 예방절차 구축 여부
 -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절차 구축 여부

2. 위험평가

법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위험들을 파악·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개별 세무사항의 중요도 측정, 발생가능성 파악 등 적절한 위험 평가 절차 구비 여부
- 새로운 영업활동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위험을 파악·검토하는 절차 구축 여부
-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시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상세하게 분석되는지 여부
- 과거에 발생한 중요 세무 쟁점사항에 대한 관리 및 대책 수립 여부

3. 통제활동

파악된 세무위험을 제거·감소·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정책·절차·체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검증부터 통제활동의 수행여부, 관련 근거 문서의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 중요 세무위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 지 여부
- 세무 쟁점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자문 및 상담 여부



- 부적법·부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한 사후검증·통제·조정 시스템 구비 여부
- 상기 부적법·부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한 최고 경영자 또는 과세 관청에 보고·신고되는 체계 구비 여부

4. 정보 및 의사소통

조직 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가 적기에 수집 및 보고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의 세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정보의 파악 및 보고 절차의 구축 여부
- 중요 세무정보에 대한 임직원간의 적절한 의사소통 형식과 수단 구비 여부
- 적절한 내부 IT 시스템의 구축 여부
- 중요 세무 쟁점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 절차 구비 여부
 - 세무 관련 쟁점사항이 보고 계통을 거쳐 최고 경영자까지 신속·정확하게 보고·조치되는 지 여부

5. 모니터링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 및 미비점에 대한 시정 체계 구축 여부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1.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태 · 종목		
⑤본점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2. 신청 세목 (법인세는 필수 신청 세목임)				
① 모 든 국 세	② 법 인 세	③부가가치세	④ 원 천 세	⑤기타()
3. 협약기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20 ~ 20				
상기와 같이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법인인감)				
지방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회사소개서(사업현황, 회사조직, 출자관계 등) 2. 내부세무통제기준(Tax Control Framework) 구축과 운영현황 3. 세무진단신청서(직전 사업연도 세무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4.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2호의2 서식】

세무진단 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태 · 종 목
⑤본점 소재지		⑥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⑦ 세무진단 사업연도 (※ 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	년 사업연도	
⑧ 세무진단 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 (법인인감)</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국세청장 귀하</p>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표준 성실납세이행 협약서

I. 협약 당사자

본 성실납세이행협약은 ○○지방국세청장과 (주)○○○[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를 당사자로 하여 20 년 월 일자로 체결한다.

II. 협약의 목적

본 성실납세이행협약은 양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세무문제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I. 협약 내용

본 협약서는 기본원칙과 세무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협약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원칙

- 가. 본 협약은 협약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일부세목만 대상일 경우 세목 명시)를 대상으로 한다.
- 나. 본 협약은 상호 신사협정으로서 세법이 규정하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 다.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 의사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납세이행과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라. 당사자들은 발생 가능한 세무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법률·법령·판례 범위 내에서 서로 신속하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 마. 당사자들은 상호신뢰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법인명]과 ○○지방국세청장 간의 협약사항

가. 협약 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무문제

본 협약은 협약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만을 대상으로 하나, (주)○○○[법인명]가 협약개시일 전의 특정 세무문제에 대해 ○○지방국세청장과의 협의를 원할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나. 협약 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무문제

(1) (주)○○○[법인명] 는 :

- ①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라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다.
- ② 중요한 세무 문제가 적시에 발견·시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현재·과거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세무 상 위험을 ○○지방국세청장에게 능동적으로 공개한다.
- ④ 세무문제를 공개·협약하는 경우 모든 관련된 사실을 법인의 견해와 함께 ○○지방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 직원이 관련된 소속 직원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대리인 또는 법인 세무담당자가 자유롭게 동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지방국세청장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장 1개월(해외자료는 3개월)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중요회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문서로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중요회계사건이란, 합병·분할 등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

① 연 1회 정기면담을 통해 내부세무통제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법인명]이 요청한 세무문제와 ○○지방국세청장이 인지한 세무문제 등을 확인·논의한다.

② (주)○○○[법인명]의 견해를 통보받은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법인명]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③ 내부세무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따라 모니터링 방식과 정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표본확인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약연도 분 세무문제 검토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법인명]에게 협약연도와 연관된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법인명]가 공개한 세무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거래·행위에 한하며 그 외에 가상의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⑥ 과세자료, 경정청구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주)○○○[법인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주)○○○[법인명]의 신고서가 제출된 후 가능한 빨리 (주)○○○[법인명]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⑧ 비밀유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최신 세무 정보를 (주)○○○[법인명]에게 제공한다.
- ⑨ (주)○○○[법인명]에게 특정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⑩ 협약이행과정에서 인지한 (주)○○○[법인명]의 경영과 과세 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한다.
- ⑪ (주)○○○[법인명]의 법인세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법인명]가 성실하게 본 협약을 이행하였고 중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어 성실히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성실 납세이행법인임을 문서로 통지)

3. 협약개시일

본 협약은 20 년 월 일(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시한다.

4. 협약기간(3년)

협약기간은 협약개시일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개시 후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졸업기준

협약체결 법인의 수입금액이 협약기간 중 2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협약은 종료한다.

6. 협약파기

가.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받는 경우

나.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2) 탈세제보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세무진단 결과 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세무조사(자료처리 경정포함) 결과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폐업, 합병 또는 분할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중요 회계사건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국세청에 문서로 알리지 않는 경우

(9)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주)○○○[법인명]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합병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협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가 협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는 협약파기 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라. 일방 당사자가 협약기간 중 본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협약 파기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 본 협약은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7. 특약사항

가.

(1) -

(2) -

나.

IV. 기 타

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주)○○○ [법인명]는 대표이사(또는 세무담당임원)가, ○○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하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서명한다.

20

(주)○○○[법인명]

대표이사 ○○○

(서명)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

(서명)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

세무쟁점에 대한 질의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전 화 번 호 (휴대번호)	()
⑤ 본 점 소 재 지			

2. 세무쟁점에 대한 질의내용 등

⑥ 사실관계

⑦ 질의내용

⑧ 관련법령(예규 또는 판례 등)

⑨ 신청인의 의견

※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세무쟁점에 대한 질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2 협약 신청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TEL : (044) 204-3322~24 FAX : (044) 216-6078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TEL : (02) 2114-2942~50 FAX : (02) 736-1502
충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TEL : (031) 888-4851~7 FAX : (031) 888-7635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TEL : (042) 615-2482~3, 2486 FAX : (042) 632-7723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TEL : (062) 236-7482~5 FAX 062) 716-7224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TEL : (053) 661-7483~5 FAX : (053) 661-7058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TEL : (051) 750-7452, 7454, 7455 FAX : (0503) 116-1134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TEL : (032) 718-6492~5 FAX : (032) 718-6031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발행일자	2019년 6월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집필·편집	법인세과장 김성환 행정사무관 김지연 국세조사관 권영훈 정영선